

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활동 활성화와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1. 모집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
- 사업기간 : 2023년 3월 ~ 12월
- 추진분야 :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(총 6개 분야)
- 참여대상 : 결혼이민자, 귀화자 및 자녀, 배우자 등
- 추진방법 : (자치구) 자조모임 접수·추천, (서울시) 선정 및 예산지원
- '23년 예산 : 9천만원

2. 사업내용

구분	주요내용
지원 대상 (신청자격)	▶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등록 자조모임 ▶ 사업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
활동분야	① 가족·사회 : 사회적 역할, 가족·관계, 인성 등 ② 교육·문화 : 모국어 교육, 독서, 놀이, 문화, 역사 등 ③ 예술·공연 : 음악, 춤, 연극, 뮤지컬 등 ④ 공예·패션 : 수공예, 미술, 패션 등 ⑤ 자원봉사 : 아동·장애인·어르신 등 봉사활동 ⑥ 기 타 : 그 외 자조모임 활동 등
운영 관련	▶ 모임인원 : 10명 이상 ▶ 활동횟수 : 월 3~5회 이상 운영
예산지원	▶ 모임당 300만원 내외 (자치구별 1~2개 단체 지원) ▶ 용도: 모임활동(사업운영비, 교육비, 다과비, 체험비 등) ※ 모임규모 및 활동에 따라 지원금 조정

※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

▶ 우대사항

-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, 모국어, 문화교육 등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
-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(가족센터, 공공도서관 등) 교육장 제공 등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

▶ 제외·제한 대상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특정기관,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·단체
-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

3. 지원내용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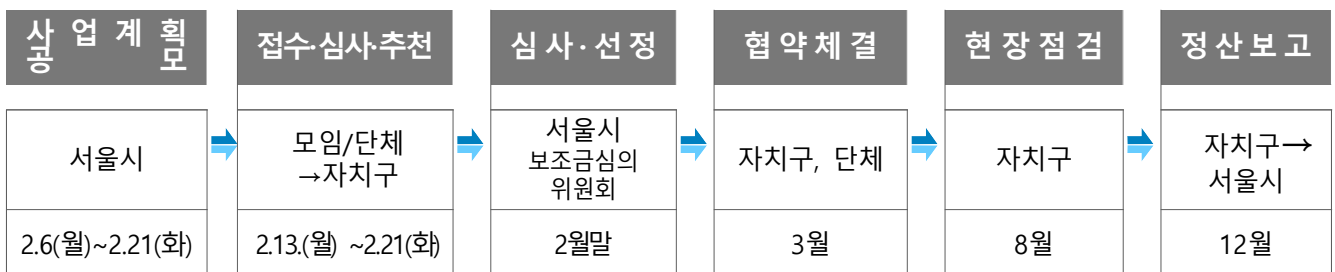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- 자조모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사업비, 관리운영비로 사용
- ※ 단체운영비(사무실 임대료, 상근인력 인건비 등), 자본적 경비(시설비 등) 제외
-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,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됨

○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

- 사업비(보조금)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
-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
- 법령, 관계 규정,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, 집행기준 등 준수
- 중간보고서 제출,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
-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

○ 지원절차



4. 제출 서류

자치구(가족센터) 제출	① 자조모임 지원신청서(붙임1)
	② 자조모임 활동계획서(붙임1-1)
비영리법인·민간단체 제출	① ~ ② 공통, ③ 단체소개서(붙임2)
	④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(붙임3)
	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(필수)
	⑥ 법인(단체)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
	- 법인(단체)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, 법인 정관사본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- 법인(단체)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(4대보험 증명서 등)

※비영리민간단체 ①~④은 책 제본하여 1부 제출

5. 제출기간 및 방법

- 공고기간 : 2023. 2. 6.(월) ~ 2. 21.(화)
- 접수일시 : 2023. 2. 14.(화) ~ 2. 21.(화), 평일접수 (월~금 18시까지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- 접수장소 : 관할 자치구(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)

※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고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

* 제출파일 예시 : 000000(기관명)_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'

6.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

- 심사 방법 : 자치구 검토 및 추천에 의거 서울시 자체 보조금 심의 후 선정
- 선정 기준 (※ 결과 발표 : 2022. 3월초)

평가항목	심사내용	배점
합계		100
법인(모임)	① 법인(모임)의 목적의 적합성(10) ② 법인(모임)의 법적도덕적건전성(10) ③ 법인조직(모임구성원)의 적합성(10)	30
수행능력	① 법인 조직(모임대표)의 전문성·운영의지(10) ② 법인(모임)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(10) ③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역량(10)	30
사업계획	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(10) ② 사업계획의 현실성·달성가능성(10)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(10)	30
기타항목	○ 구성원 다양성[선주민 등 2개 이상 국적] ○ 부모, 자녀가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 구성 등	10

7. 유의사항

- 기재사항이 누락 되거나,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의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-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-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
 ※ 지출 관련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

8. 문의처

-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(☎ 02-2133-8699, 리에브게니아)
- 자치구(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)

연번	자치구명	부서명	전화번호
1	종로구	어르신여성과	2148-2332
2	중구	가족정책과	3396-5433
3	용산구	여성가족과	2199-7173
4	성동구	여성가족과	2286-6837
5	광진구	가정복지과	450-7560
6	동대문구	보육여성과	2127-5082
7	종량구	보육지원과	2094-1792
8	성북구	여성가족과	2241-2584
9	강북구	여성가족과	901-6702
10	도봉구	가족정책과	2091-3133
11	노원구	여성가족과	2116-3721
12	은평구	가족정책과	351-6225
13	서대문구	가족정책과	330-1426
14	마포구	가족행복지원과	3153-8932
15	양천구	가족정책과	2620-3386
16	강서구	가족정책과	2600-6763
17	구로구	가족보육과	860-3056
18	금천구	가족정책과	2627-2882
19	영등포구	아동청소년과	2670-1622
20	동작구	아동여성과	820-1491
21	관악구	여성가족과	879-6131
22	서초구	여성보육과	2155-6685
23	강남구	가족정책과	3423-5838
24	송파구	여성보육과	2147-2791
25	강동구	가족정책과	3425-9252